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2015 - 425 호 2015. 12. 28.

사 건 번호 2015서건0187

사 건 명 재신씨티엔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재신씨티엔지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6, 3층 대표이사 권ㅇㅇ

심의종결일 2015. 12. 11.

주 문

-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건설에게 건축물 바닥보강공사를 건설위 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 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건설에게 건축물 바닥보강공사를 건설위 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건설¹⁾에게 '울산 현대차 변속기 케이스공장 바닥보강공사'를 건설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 력평가액이 ㅇㅇㅇㅇ건설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 2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 丑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설립일	매출액 (2013년)	시공능력평가액 (2014년)	상시고용종업원수 (2013년)
피심인	1998. 3. 6.	2,562	7,236	9
ㅇㅇㅇㅇㅇ건설	2003. 10. 10.	1,083	1,891	5

^{*} 자료출처: 피심인 등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회 피심인은 2014. 8. 4.경,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건설(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울산 현대차 변속기케이스공장 바닥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¹⁾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공사명	공사기간	금액
울산 현대차 변속기케이스공장 바닥보강공사	2014. 8. 4. ~ 2014. 8. 10.	92,5102)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 4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2014. 8. 4.경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소명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3))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 회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소명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4)

^{2) 2014. 8.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상의 금액이다.

³⁾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이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4. (생략)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5)

^{4)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피심인이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6)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의 피심인의 위 2. 가.의 서면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7)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의2 제 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⁵⁾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후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하였으나, 위반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미지급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관이 경고하였다.

⁶⁾ 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에 의하면 ①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나, 피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니다.

⁷⁾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서면미발급에 해당하고, 서면미발급과 관련한 하도급거래금액이 5천만원(이 사건 하도급거래금액은 61,160천 원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피심인이 미지급 지연이자(2,360천 원)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하여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피심인이 영세 중소기업자이면서 과거 3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는점,법위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1개에 불과하고 위반금액의 비율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에 따라 산정한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게 되면,부과과징금이 1백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3. 다.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부과할 과징금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12월 28일

의 장 위 원 신동권

위 원 김성하

위 원 이재구